

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○ 국민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울산지방법원 소재지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여 고등법원의 비대화 및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지역을 울산지방법원 소재지로 추가 확대 함(안 제2조)

4.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 부개정규칙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창원지방법원 소재지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”를 “울산지방법원 소재지와 창원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판사무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) 제2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가 재판할 사건으로서 2021년 3월 1일 이전에 항소 또는 항고가 제기된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이 재판한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운영담당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842